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11차 국토교통위원회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항의 정의에 대한 민·군겸용공항 추가 >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50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곽 현 준

## 목 차

|                                          |   |
|------------------------------------------|---|
|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2204450) .....              | 1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3 |
| 1. 공항의 정의에 대한 민·군겸용공항 추가(안 제2조제4호) ..... | 3 |
| 가. 개정안의 내용 .....                         | 3 |
| 나. 검토의견 .....                            | 4 |
|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                   | 7 |
| 1) 국토교통부 .....                           | 7 |
| 2) 서울지방항공청 .....                         | 7 |
| 3) 부산지방항공청 .....                         | 8 |
| 4) 한국공항공사 .....                          | 8 |
| 5) 한국항공협회 .....                          | 8 |

##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2204450)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재봉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9. 30.
3. 회 부 일 : 2024. 10. 2.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현행법령 체계는 민간공항에서 발생한 소음피해 보상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민·군겸용공항에서 발생한 소음피해 보상의 경우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군겸용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은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 소음에 함께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군겸용공항에서 발생한 소음피해의 경우 군용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더욱이 향후 여객수요 증가로 민·군겸용공항에서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공항에 관한 정의 규정에서 단서규정을 삭제하면서 공항의 범위에 민·군겸용공항을 추가함으로써 민·군겸용공항에서 발생하는 민간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단서 삭제 등).

### Ⅲ. 검토의견

#### 1. 공항의 정의에 대한 민·군겸용공항 추가(안 제2조제4호)

#####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이라 함)에 따른 공항의 정의에 민·군겸용공항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 3. (생략)<br>4.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과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건설하는 <u>공항</u> 을 말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u>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제외</u> 되,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있는 <u>공항은 포함한다</u> . | 제2조(정의) -----<br>-----.<br>1. ~ 3. (현행과 같음)<br>4. -----<br>-----<br>----- <u>공항</u>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u>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을 포함한다</u> )을-----<br>--. <단서 삭제><br><br>5. ~ 9. (현행과 같음)<br><br><b>부 칙</b><br>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나. 검토의견

현재 광주, 군산, 김해, 대구, 사천, 원주, 청주, 포항경주공항 총 8개의 민·군겸용공항이 존재하는데, 현행법 제2조제4호 단서는 공항을 정의하면서, 김해공항 외의 민·군겸용공항을 제외<sup>1)</sup>하고 있음.

이에 따라 김해공항을 제외한 민·군겸용공항의 주변 지역은 민간항공기의 운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도 함께 겪고 있음에도 「공항소음방지법」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사업 등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음.

- 
- 1) 이는 지난 동법 제정심사 당시 군용 비행장과 관련하여는 별도 법에 따르도록 하고, 민간공항을 대상으로 하되 김해공항의 경우 민간항공기의 운항이 80% 이상인 점, 전투기가 아닌 수송기가 주로 운용되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 2010.2.17. 회의록 p.57-58)

참고로 민·군겸용공항의 지난 2023년 1년 간의 민간항공기 운항편수를 살펴보면 김해공항의 경우 82,185편으로 가장 많고, 청주(22,547편), 대구(20,244편), 광주(13,277편), 포항경주(2,053편), 사천(1,490편), 원주(1,379편), 군산(1,124편) 순임.

또한, 「공항소음방지법」 제정 이전 「항공법」 및 그에 따른 하위법령에서 항공기 소음피해방지대책은 김해공항 외의 군용비행장을 수립·시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음.

「항공법」

第107條(소음피해방지대책의 수립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航空機에 의한 騒音의 被害를 방지 또는 저감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에게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수립·施行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騒音의 被害를 방지하기 위한 對策을 수립하여야 할 空港騒音被害地域 또는 空港騒音被害豫想地域을 미리 지정·告示하여야 한다.

③ (생략)

「항공법 시행령」

제40조(소음대책 수립등)①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하 "소음대책"이라 한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공항(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 공항에 대하여 수립·시행한다.

②·③ (생략)

이에 개정안은 민·군겸용공항에 대해서도 민간항공기의 운항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현행 소음피해보상 체계를 살펴보면, 「공항소음방지법」은 김해공항 및 민간공항에 대한 소음피해를 보상하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라 함)은 김해공항을 제외한 군용비행장<sup>2)</sup>에 대한 소음피해를 보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김해공항을 제외한 군용비행장(민·군겸용공항 포함) 주변 지역 주민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1인당 연 36만원~72만원의 보상금을 받고 있음.

### 【 공항소음방지법 및 군소음보상법의 사업 비교 】

(단위 : 만원/연)

| 소음도                           | 군소음보상법      |     | 공항소음방지법                                  |                     | 비 고                                                                                                                                                   |
|-------------------------------|-------------|-----|------------------------------------------|---------------------|-------------------------------------------------------------------------------------------------------------------------------------------------------|
|                               | 보상내용        | 가 액 | 사업내용                                     | 가 액                 |                                                                                                                                                       |
| 95 웨클<br>(79Lden<br>dB)<br>이상 | 소음피해<br>보상금 | 72  | · 소음대책사업<br>· 주민지원사업<br>· 손실보상 및<br>토지매수 | 58<br>(손실보상<br>미포함) | · 방음 : 33.3만원 (2,300만/30년/2.3)<br>· 냉방 : 13.5만원 (310만/10년/2.3)<br>· 전기료 : 8.7만원 (연 20만/2.3)<br>· TV수신료 : 1.3만원 (연 3만/2.3)<br>· 주민지원사업 : 인당 연 1.3만원 수준 |
| 90~95                         |             | 54  |                                          |                     |                                                                                                                                                       |

#### 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군용비행장”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전술항공작전기지는 제외한다),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를 말한다.

| 소음도                              | 군소음보상법 |                                 | 공항소음방지법              |     | 비 고                                                                                                                                                   |
|----------------------------------|--------|---------------------------------|----------------------|-----|-------------------------------------------------------------------------------------------------------------------------------------------------------|
|                                  | 보상내용   | 가 액                             | 사업내용                 | 가 액 |                                                                                                                                                       |
| 웨클<br>(75~79<br>LdendB)          |        | 36<br><br>(도시 : 85,<br>농촌 : 80) | · 소음대책사업<br>· 주민지원사업 | 58  | · 손실보상 : 감정평가에 따름                                                                                                                                     |
| 85~90<br>웨클<br>(70~75<br>LdendB) |        |                                 |                      |     |                                                                                                                                                       |
| 80~85<br>웨클<br>(66~70<br>LdendB) |        |                                 |                      |     |                                                                                                                                                       |
| 75~80<br>웨클<br>(61~66<br>LdendB) | -      | -                               |                      |     | · 방음 : 33.3만원 (2,300만/30년/2.3)<br>· 냉방 : 13.5만원 (310만/10년/2.3)<br>· 전기료 : 8.7만원 (연 20만/2.3)<br>· TV수신료 : 1.3만원 (연 3만/2.3)<br>· 주민지원사업 : 인당 연 1.3만원 수준 |
| 70~75<br>웨클<br>(57~61<br>LdendB) | -      | -                               | · 주민지원사업             | 1.3 | · 주민지원사업 : 인당 연 1.3만원 수준                                                                                                                              |

자료 : 국토교통부

결국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소음피해보상과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피해보상이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체계를 변경할 것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에 따라 공항에 민·군겸용공항을 포함시키는 경우 김해 공항을 제외한 민·군겸용공항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소음피해보상과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피해보상을 중복적으로 받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sup>3)</sup>.

아울러,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에 따르면 별도의

3) 참고. 민·군겸용 군용비행장 보상현황

공항별 소음영향도 측정 및 분석을 통한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범위, 지원대상 세대수 및 인구 등의 자료가 부재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한 상황이나, 민·군겸용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피해보상을 위해 적지 않은 재원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재원 마련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 1) 국토교통부

고소음 전투기를 운용하는 민·군겸용공항은 소음피해의 주 원인자인 국방부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군소음보상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민·군겸용공항에 대하여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추가로 지원하게 되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 등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2) 서울지방항공청

민·군겸용공항의 경우 이·착륙 항공기의 항로는 비슷하고, 민간항공기에 비해 전투기의 소음도가 높고 이·착륙 횟수도 잦아 군용항공기 의한 소음피해가 더 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군용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만으로도 지원은 충분하다는 의견임.

### 3) 부산지방항공청

민·군겸용공항은 소음피해의 주원인자가 군용항공기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고, 민·군겸용공항은 항로 등 관제업무를 군에서 소관하는 등 민간공항과 달라 조사범위의 한계 등 여러 애로사항이 예상된다는 의견임.

### 4) 한국공항공사

개정안 시행 시 「군소음보상법」과의 중복 지원 여부, 재원 확보 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5) 한국항공협회

개정안에 따라 「공항소음방지법」 적용대상 공항에 민·군겸용공항을 추가할 경우, 「군소음보상법」의 보상 내용과 공항소음방지법의 지원 내용이 중복되고, 군용기는 기상 상태, 훈련목적 등 작전상황에 따라 비행패턴과 운항횟수가 매우 불규칙하며 민간항공기 대비 발생하는 소음이 월등히 크고 소음영향권 면적도 넓은 반면에 민간항공기는 비행패턴과 운항횟수가 일정하여 소음피해기여도가 군용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민·군겸용공항은 「군소음보상법」 적용을 통해 주요 소음발생요인인 군용기에 대한 관리 및 소음피해대책을 우선 수립할 필요가 있고

국적사의 지역주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항공노선 운영 노력 등 지역  
상생 기여를 감안하여 민·군겸용공항 발생 소음 관련 규제로 비용부담  
가중 등 추가적인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
|--------------|
| 문 의 처        |
| 02)6788-5580 |

## 참고

## 민·군겸용 군용비행장 보상현황

(인원 / 금액 : 명 / 천원)

| 비행장     | 종 구역    | 2023년   |            |
|---------|---------|---------|------------|
|         |         | 지급인원    | 지급금액       |
| 대구비행장   | 1종      | 8,092   | 4,050,125  |
|         | 2종      | 28,299  | 10,589,567 |
|         | 3종      | 49,364  | 12,005,126 |
| 광주비행장   | 1종      | 543     | 283,929    |
|         | 2종      | 29,291  | 10,604,810 |
|         | 3종      | 24,670  | 5,667,377  |
| 청주비행장   | 1종      | 321     | 176,270    |
|         | 2종      | 924     | 367,450    |
|         | 3종      | 17,269  | 3,902,060  |
| 원주비행장   | 1종      | 860     | 442,314    |
|         | 2종      | 2,173   | 814,943    |
|         | 3종      | 36,323  | 9,457,483  |
| 군산비행장   | 1종      | 208     | 110,956    |
|         | 2종      | 258     | 101,412    |
|         | 3종      | 1,664   | 468,679    |
| 포항경주비행장 | 1종      | 741     | 349,741    |
|         | 2종      | 737     | 265,744    |
|         | 3종      | 2,241   | 549,977    |
| 사천비행장   | 보상인구 없음 |         |            |
| 합계      |         | 203,978 | 60,207,963 |

자료 : 국방부